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3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종배의원안)	3

I. 개요

1.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2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10.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종배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 공제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r><td colspan="2">24년 소비 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전통시장</td><td>50%</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24년 소비 증가분		10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전통시장	50%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한시적용	10%																																																				

* 이종배의원안 2024. 6. 10. 제출(의안번호 235)

□ 개정안은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②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 먼저,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2023년 3조 9,458억원이고, 2024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1,18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 가계의 세부담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실상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약 20년이 넘게 동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동 조세특례의 조세 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861만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263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92.7억건, 결제금액은 약 389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약 4,500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2023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6,810,202.3	28,608,422.5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192,119.0	1,262,875.4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급금액	1,164,639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발급건수	4,530	4,508	4,132	4,327	4,476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둘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더 크게 귀착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특례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서, 「소득세법」 상 더 큰 한계세율³⁾에 직면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여력이 더 큰 고소득자에 더 큰 세제혜택에 직면하게 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경제상황 및 관련 조세지출 규모 등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음, ②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 비해 10%p 높은 50%로 상향조정 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체감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심리의 자극을 도모할 수 있음.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⁴⁾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은 둔화될 것이나,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⁵⁾·고금리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서민

3)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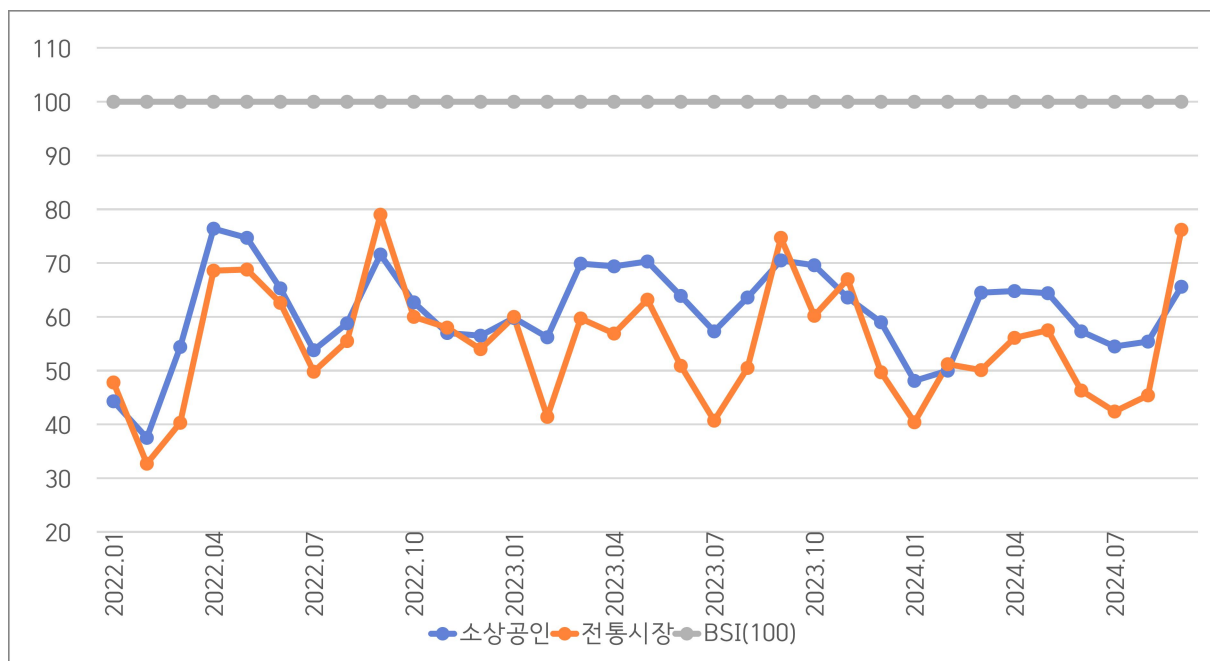
4)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4. 7. 3.

체감경기 회복에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면 가게의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이후 전통시장 체감 BSI가 소상공인 체감 BSI와 같이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는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방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소상공인시장 체감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물가상승률(%): ('21) 2.5 ('22) 5.1 ('23) 3.6 ('24) 2.6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2.0%]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료품 주 구입 장소 중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고,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접근성, 가격, 품질 순이며,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⁶⁾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식료품 주 구입 장소 비교]

(단위: %)

구입 장소	비중
대형할인점	32.5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9.9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15.7
재래(전통)시장	12.2
통신판매	5.4
편의점	1.2
친환경 식품 전문점	0.7
백화점	0.7
기타	1.7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6)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가구의 식료품 주 구입장소 선택 이유]

(단위: %)

이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30.3	29.5	31.3	27.8
- 품질이 좋아서	19.9	18.7	19.2	18.3
- 가격이 저렴해서	19.5	18.5	16.0	18.8
- 식료품 외 다른 상품도 구입	13.1	14.2	15.5	15.0
- 직접 배달해주므로	6.4	5.8	5.3	6.4
- 상품이 다양해서	9.6	10.8	10.2	10.6
-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1.2	2.1	2.2	2.7
- 지역산 농식품 구입	0.0	0.4	0.2	0.4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둘째, 소비진작 효과를 위한 소득공제율의 상향 정책이 상시화될 경우 일정 기간 도과 후 해당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항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정부가 2024년 상반기에 사용한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⁷⁾.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세수감소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조 3,402억원, 총 13조 3,606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7) 관련하여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9)」이 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